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7호 2017. 2. 1.(수)

선	기관의 장
람	

- 【조 례】
- 【규 칙】
- 【훈 령】
- 【예 규】
- 【공 고】

제2017-95호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2017-97호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제2017-107호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8

제2017-125호 유구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31

제2017-126호 소하천(능골천 외 1개소)정비 시행계획의 공고(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35

제2017-133호 임대조건 공고 49

【고 시】

제2017-15호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50

제2017-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51

제2017-17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53

제2017-1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5

제2017-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정보교육원)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57

제2017-21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봉황로 구간 추가 고시 59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온누리공주시민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
 - 사적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마일리지 사용으로 전환 지원
- 나. 온누리공주시민의 활동 활성화 도모
 - 공주시 방문 유도 및 공주시 생산품에 대한 잠재 고객 확대
- 다. 온누리공주파트너스(가맹점) 선정 및 운영의 현실화
 - 온누리공주파트너스 선정 및 운영 체계 정비와 지원의 현실화
- 라.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 가. 온누리시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안 제4조)
 - 홈페이지 운영, 정보 제공, 이벤트 개최, 파트너스 관리 등
- 나. 마일리지제도의 운영(안 제6조)
 - 마일리지 부여, 사용, 관리 등 제도운영
- 다. 온누리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안 제7조)
 - 파트너스 할인, 이벤트 및 행사 참여, 시정 정보제공 등
- 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8,9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당연직 및 위촉직 구성 방법
 - 기본계획, 약관의 변경 등 위원회의 심의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미디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미디어담당관실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전 화: 041-840-8103 / FAX: 041-840-233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의 발전과 온누리공주시민의 권익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와 온누리공주시민의 상생발전과 도·농 교류 촉진의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누리시민제도”란, 공주시 문화·관광·역사·지역 특산물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온누리공주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도·농 교류촉진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누리공간”이란, 온누리시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에서 구축한 온누리공주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의 원활한 참여와 등록을 위하여 개설한 외국어 홈페이지도 포함한다.
3. “온누리공주시민”이란, 온누리시민제도(이하 “시민제도”라 한다)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온누리공주시민증”이란, 온누리공주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회원증을 말한다.
5. “온누리공주파트너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

인, 음식업·숙박업, 박물관, 레저·스포츠업, 사찰, 체험 마을 등 온누리공주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를 말한다.

6. “온누리공주시민 약관” 이란, 시민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입, 탈퇴, 이용방법,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분쟁의 조정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등록) ① 온누리공주시민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공주시민 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가입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② 온누리공주시민은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

제4조(사업) 시장은 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온누리공주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시와 온누리시민 상호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사업
5.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서비스,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6. 시민제도 활성화와 온누리공주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개최
7. 온누리공주파트너스의 확보 및 선정, 교육 등 관리
8. 온누리공주시민 혜택의 증가를 위한 서비스 제공업체와 업무제휴
9. 온누리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시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누리공주파트너스의 선정) 온누리공주파트너스는 선정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한다.

② 시장은 온누리공주파트너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1. 지정서 제작 및 부착
2. 온누리공주시민의 사용 마일리지 보상
3. 그 밖에 시민제도와 온누리공주파트너스를 상생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제6조(마일리지) 시장은 시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고, 마일리지의 부여, 사용, 관리, 소멸 등은 약관으로 정한다.

제7조(혜택의 제공)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 할 수 있다.

1. 온누리공주시민증 발급
2. 온누리공주파트너스의 할인 서비스
3. 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4. 시 주관 체육대회· 축제· 문화행사 등의 참여 우대
5. 시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 및 시 운영 관광시설의 이용에 대한 혜택
6. 시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공모전 참여자에 대한 경품 등 인센티브
7. 활발히 활동하는 우수 온누리공주시민에 대한 기념품·상품권 등 제공
8. 농지 및 농원, 농·특산물의 경작 및 수확권한 등 사용권한(Owner제도) 주선
9.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시정 소식 알림
10. 시의 축제· 행사에 원활한 참여를 위한 시티투어 서비스
11. 온누리공주시민을 단골고객화하기 위한 농·특산물 등 판촉 상품 제공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제도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의원 1명, 국장·단장·소장, 담당관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하고, 그 지원자 중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제도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관의 변경 등 다수의 온누리공주시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항
3. 시민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중 “시민증을 제시하는” 을 “시민에 가입된” 으로 한다.

②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삭제한다.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명칭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안전관리과(안전정책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8671, FAX : 041) 840-233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2장의 제목, 제4조의 제목,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 제목,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 제목,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 제14조의 제목,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2조제2항, 제23조의 제목, 제23조, 제24조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공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u>통합지휘소</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u>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u>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p> <p>4.·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u></p> <p>제4조(<u>통합지휘소 설치·운영</u>)</p>	<p style="text-align: center;"><u>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통합지원본부</u>----- -----.</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u>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u> <u>부</u> “</p> <p>4.·5.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u></p> <p>제4조(<u>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u>)</p>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
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공
주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
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 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
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
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결
과를 통합 지휘소의 장에게 수
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

-----.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

통합지원본부-----.

② 통합지원본부의 -----
-----통합지원본부의 -----
-----.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
보) ① -----

통합지원본부-----
-----.

② 통합지원본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 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

-----.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

통합지원본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

-----.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생략)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제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공주시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10. (생략)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원본부-----

-----.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의 -----

----통합지원본부를 -----
----.

제24조(권한의 위임) -----

----- 통합지원본부-----
-.

1. ~ 10. (현행과 같음)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조례』 제4조의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 증대 추진
- 사계절 아름다운 공주를 알리기 위하여 계절별 축제 콘텐츠 개발과 계룡산 벚꽃축제,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백제어울마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명품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지역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참여, 지역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협조체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의거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에서 조례로 위임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일부 객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지역 내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활성화하여 머무는 관광도시 전환계기 마련

2. 주요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 제2항)**
 - 내·외국인, 수학여행단, 공주역 이용객별 단체관광객 범위 명시
- **관광진흥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명시**
 - 공주시 관광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제3호)
 - 여름공주 축제, 겨울공주축제, 백제어울마당, 계룡산 벚꽃축제 지원근거 마련 (안 제5호제22호)
-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6장)**
 - 공주시 관광협의회 구성 및 기능, 실무협의회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안 제7장)**
 -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곳의 객실의 30% 범위에서 취사시설 기준 완화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관광과

- 주소 : (우)32552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 전화 : 041)840-8086 / FAX: 041)840-232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 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 등” 을 “운영 및 관광협의회 지원 등” 으로, “정함” 을 “규정함” 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진흥사업, 문화예술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 사업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홍보하는 경우
3.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과 기준은 별표와 같고,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가이드)

2. 체육행사, 축제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 진행에 의한 경우
3. 정치·종교 등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5.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주시관광협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22호까지,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같은 항 제4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 및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관광·농촌·지역문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축제

가. 백제문화제

나. 석장리구석기축제

다.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라. 계룡산 산신제

마. 공주알밤 축제

바. 공주밤꽃 축제

사. 유구우렁각시 축제

아. 마곡사 신록 축제

자. 공주항공 축제

차. 마곡사토요무대

카. 여름공주 축제

타. 겨울공주 축제

파. 백제어울마당

하. 계룡산 벚꽃 축제

제6장의 제목 “보칙” 을 “공주시관광협의회” 로 한다.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를 제21조로 한다.

제19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구성) ① 공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되, 설립 과정에서 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18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다음에 “제7장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을 삽입한다.

제7장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3호가목(2)의 단서”에 해당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기준

구분	지원요건			지원금액(원)		비 고
	인원	당 일	숙 박 (1박)	당 일	숙 박	
① 내 국 인	20명 이상	1. 관광지 2개소 2. 음식점 1개소	1. 관광지 4개소 2. 음식점 2개소 3. 관내 숙박업소	3,000	10,000	1인당
② 외 국 인	10명 이상			5,000	15,000	
③ 수학여행단	30명 이상			-	5,000	
④ 공주역 이용	15명~20명			200,000	300,000	팀당
	21명~40명	300,000	500,000			

※ 2박, 3박의 경우 지원요건과 지원금액은 숙박 일수에 비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주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및 축제를 육성·지원하며 효율적인 문화관광해설사 <u>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을 <u>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운영 및 관광협의회 지원 등</u>-- <u>규정함</u>-----.</p>
<p>제4조(지원 대상) <u>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진흥사업, 문화예술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4조(지원 대상) ① <u>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진흥사업, 문화예술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 사업</u> 2. <u>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홍보하는 경우</u> 3. <u>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u> 4. <u>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 사업</u> 2. <u>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홍보하는 경우</u> 3. <u>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u> 4. <u>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②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과 기준은 별표와 같고,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가이드)
2. 체육행사, 축제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 진행에 의한 경우
3. 정치·종교 등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5.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2. (생략)
3. 관광사업자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관광객 유치 행사를 위한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공주시관광협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4. 관광사업자 단체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8. (생 략)
9. (생 략)
10. (생 략)
11. (생 략)
12. (생 략)
13. (생 략)
14. (생 략)
15. (생 략)
16. (생 략)
17. (생 략)
18. (생 략)
19. (생 략)
20. (생 략)
21. (생 략)
22. (생 략)

<신 설>

<삭 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5. (현행 제6호와 같음)
6. (현행 제7호와 같음)
7. (현행 제8호와 같음)
8. (현행 제9호와 같음)
9. (현행 제10호와 같음)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11. (현행 제12호와 같음)
12. (현행 제13호와 같음)
13. (현행 제14호와 같음)
14. (현행 제15호와 같음)
15. (현행 제16호와 같음)
16. (현행 제17호와 같음)
17. (현행 제18호와 같음)
18. (현행 제19호와 같음)
19. (현행 제20호와 같음)
20. (현행 제21호와 같음)
21. (현행 제22호와 같음)

22. 관광·농촌·지역문화·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축
제

가. 백제문화제

나. 석장리구석기축제

다. 응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라. 계룡산 산신제

마. 공주알밤 축제

23.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백제문화제, 석장리구석기축제,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계룡산 산신제)

24. 농촌관련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공주알밤축제, 공주밤꽃축제, 유구우렁각시축제)

25.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고마나루축제, 마곡사 신록축제, 공주항공축제, 마곡사토요무대)

26. (생략)

27. (생략)

② (생략)

제6장 보칙

제17조 (생략)

<신설>

바. 공주밤꽃 축제

사. 유구우렁각시 축제

아. 마곡사 신록 축제

자. 공주항공 축제

차. 마곡사토요무대

카. 여름공주 축제

타. 겨울공주 축제

파. 백제어울마당

하. 계룡산 벚꽃 축제

<삭제>

<삭제>

<삭제>

23. (현행 제26호와 같음)

24. (현행 제2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공주시관광협의회

제22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7조(구성) ① 공주시 관광협의회

(이하 “협회” 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

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되, 설립 과정에서 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18조 (생략)

<신설>

제21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8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9조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1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제20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3호가목(2)의 단서”에 해당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공주시 공고 제 2017 - 125호

**유구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유구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관계 도서를 공람·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9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유구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공공지)
- 2) 명 칭 : 유구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공공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시 설 명	등급 또는 시설세분	단위	규 모	비 고
도로 신설	중로3-7호, 폭원12m	m	L = 47	
주차장 변경	노외주차장	m ²	A = 1,652	주차면수 : 44면
공공공지 신설	보도	m ²	A = 197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유구농협 조합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93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1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및 소유권 외 권리 명세서 : “붙임1”

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기존공공시설 현황 : “붙임2”

아. 공람기간 : 2017. 2. 1. ~ 2017. 2. 15.(14일간)

자.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041-840-8547)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97-1 유구읍사무소(☎ 041-840-2722)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및 소유권 외 권리 명세서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 권리 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관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의 내용 및 종류		
	면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8,519	2,429					
1	유구읍	석남리	291	차	1,881	1,60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	유구읍	석남리	292-13	답	185	185	유구농협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93			
3	유구읍	석남리	292-16	답	12	1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4	유구읍	석남리	298	답	2,820	399	유구농협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93			
5	유구읍	석남리	440	구	3,621	226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사

- 해당 없음 -

【붙임 2】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기존 공공시설 현황

1.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현황

시설명	등급 또는 시설세분	단위	규모	비고
도로 신설	중로3-7호, 폭원12m	m	L = 47	
주차장 변경	노외주차장	㎡	A = 1,652	주차면수 : 44면
공공공지 신설	보도	㎡	A = 197	

2. 기존 공공시설 현황

- 해당 없음 -

의견제출서식

의견 제출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소하천(능골천 외 1개소) 정비 시행계획의 공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공주시 공고 제2017- 126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소하천(능골천 외 1개소) 정비시행계획(소규모 환경영향평가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기간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01일

공 주 시 장

소하천 명	사 업 개 요									비 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 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橋梁)	착공	준공		
능골천	능골 소하천 정비사업	신풍면 봉갑리 451	신풍면 봉갑리 476- 20	2,274	2,084	교량 4개소	2017. 03	2018. 12	소하천 재해 예방	
구자골 소하천	구자골 소하천 정비사업	정안면 어물리 308	정안면 어물리 321	1,375	611	합성형 라멘교 1개소, BOX 개가설 3개소	2017. 03	2018. 12	소하천 재해 예방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02. 01. ~ 2017. 02. 15.(14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041- 840- 8668)
신풍면 산업개발팀, 정안면 총무팀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1식

- 능골 소하천 정비사업 세부 정비시행계획 -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능골 소하천 정비사업

2.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능골천은 제방단면이 부족하고 호안이 노후되어 홍수시 제방에 세굴이 발생하여 인근 농경지 침수 등의 손해가 발생됨에 따라 기수립된 공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한 소하천계획법선에 맞춰 제방 보축 계획을 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제내지측 농경지를 편입하게 되나,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재해 예방을 통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치수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 사업량 : 축제 L=2,274m, 호안 L=2,084m
- 사업비 : 2,677백만원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451 번지 ~ 476- 20 번지 일원

3.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소하천 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4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6.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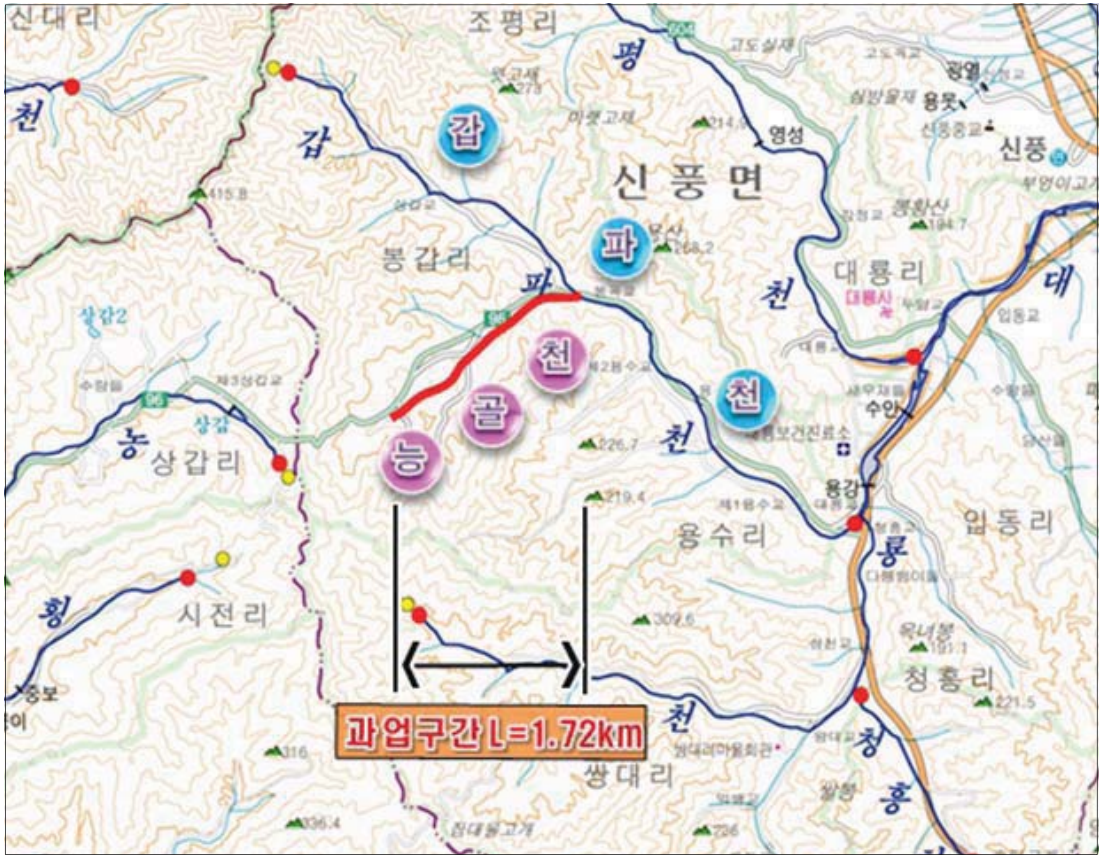
7.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 해당없음

8. 실시설계도서

- 별첨 설계도서 참조

9.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10. 예정 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구 분	보할 (%)	공사기간						비고
		4개월	8개월	12개월	16개월	20개월	24개월	
축 제 공	9	4	4	1				
호 안 공	45		12	14	13	6		
구조물공	8			2	4	2		
교 량 공	31		15	16				
포 장 공	1					0.7	0.3	
부 대 공	6	1	1	1	1	1	1	
월별진도	100	5	32	34	18	9.7	1.3	
누계진도		5	37	71	89	98.7	100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백만원)

사업명	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비고
능골 소하천 정비사업	3,350	600	1,300	1,450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 보상계획 공고 : 공주시 공고 2017- 52호(2017. 01. 13.)

나. 보상시기 및 절차

- 보상시기 : 2017년 1월 ~
- 보상절차 및 방법 : 공주시 안전관리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에 산술 평균치

13. 기타사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041- 840- 8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자골 소하천 정비사업 세부 정비시행계획 -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구자골 소하천 정비사업

2.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에 위치한 구자골 소하천 정비를통 하여 집중 호우, 우기시 원활한 유수의 흐름을 유도하여 하천 유역의 영농편익과 농지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 사업량 : 축제 및 호안 L= 1,986m
- 사업비 : 3,300백만원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308번지 ~ 321번지

3.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소하천 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4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6.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7.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 해당없음

8. 실시설계도서

- 별첨 설계도서 참조

9.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10. 예정 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구 분	보할 (%)	공사기간						비고
		4개월	8개월	12개월	16개월	20개월	24개월	
축 제 공	9	4	4	1				
호 안 공	45		12	14	13	6		
구조물공	8			2	4	2		
교 량 공	31		15	16				
포 장 공	1					0.7	0.3	
부 대 공	6	1	1	1	1	1	1	
월별진도	100	5	32	34	18	9.7	1.3	
누계진도		5	37	71	89	98.7	100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백만원)

사업명	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비고
구자골 소하천 정비사업	3,300	600	1,300	1,400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 보상계획 공고 : 공주시 공고 2017- 52호(2017. 01. 13.)

나. 보상시기 및 절차

- 보상시기 : 2017년 1월 ~
- 보상절차 및 방법 : 공주시 안전관리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에 산술 평균치

13. 기타사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041- 840- 8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능골 소하천 편입토지내역

연번	위치	지번	지적(㎡)	편입예정 면적	지목	주 소	성 명	비고
계		57필지		20,078				
1	신풍 봉갈	36	281	6	답	인천 남구 용현1동 서부동 371	임흥복	
2	신풍 봉갈	산37	50,380	1,663	임	경기 파주시 창석로 300,909동 1502호 (디올동,청석마을 대원효성아파트)	김우동	
3	신풍 봉갈	178	645	440	전	신풍면 용수봉갈길 329-24	노복동	
4	신풍 봉갈	산38	64,760	-	임	청양군 대치면 상갈리 42	윤달식 외1	
5	신풍 봉갈	179	1,593	434	전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52,504동 1008호 (적전동,도두리마을동보아파트)	김선동	
6	신풍 봉갈	산40	92,529	747	임	신풍면 신풍면 줄바위길 41-33	조광희	
7	신풍 봉갈	43-9	431	421	도	신풍면 봉갈리 52	유현식	
8	신풍 봉갈	43-10	50	50	답	신풍면 봉갈리 52	유현식	
9	신풍 봉갈	44-2	27	27	도	신풍면 봉갈리 52	유재철	
10	신풍 봉갈	180-1	755	364	답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30길 19-11(신정동)	유재성	
11	신풍 봉갈	180-4	1,122	508	답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30길 19-11(신정동)	유재성	
12	신풍 봉갈	180-3	1,507	818	답	신풍면 봉갈리 246	이철식 외2	
13	신풍 봉갈	201	1,190	547	답	신풍면 용수봉갈길 329-54	김응수	
14	신풍 봉갈	199-6	96	18	임	신풍면 용수봉갈길 329-54	김응수	
15	신풍 봉갈	199-7	188	20	구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100	권영문 외5	
16	신풍 봉갈	198	2,959	231	전	신풍면 줄바위길 63-49	송한용	
17	신풍 봉갈	197	1,471	24	답	신풍면 줄바위길 63-49	김 영	
18	신풍 봉갈	195	1,446	837	답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220번길 13 105동 1602호(산곡동,한신휴아파트)	김 찬	
19	신풍 봉갈	211	169	102	답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220번길 13 105동 1602호(산곡동,한신휴아파트)	김 찬	

20	신용 봉감	212	3,924	38	답	신용면 줄바위길 63-63	강인찬
21	신용 봉감	278-1	1,435	438	답	공주시 웅진절골3길 25,다동306호(웅진동,경일아파트)	김준남
22	신용 봉감	278-2	1,279	702	답	신용면 봉감리 449	이연욱
23	신용 봉감	278-3	2,374	279	답	신용면 줄바위길 130-23	이건성
24	신용 봉감	278-4	3,302	1,108	답	신용면 줄바위길 159-20	서원형
25	신용 봉감	산45	83,369	230	임	신용면 줄바위길 63-63	강연창
26	신용 봉감	181-1	2,825	1,186	답	전북 익산시 서동로30길 35-16(마동)	유희영
27	신용 봉감	181-3	1,419	166	답	신용면 용수봉감길 329-54	김응수
28	신용 봉감	181-2	518	218	답	신용면 줄바위길 63-63	강연창
29	신용 봉감	194-3	988	581	답	신용면 줄바위길 149-19	김선명
30	신용 봉감	193	271	271	답	신용면 줄바위길 149-19	김선명
31	신용 봉감	191	1,017	166	답	신용면 줄바위길 149-19	김선명
32	신용 봉감	192	198	183	답	신용면 줄바위길 149-19	김선명
33	신용 봉감	191-1	57	4	도	전안시 서북구 쌍용1길 58,305동506호(쌍용동,주공아파트)	이용순
34	신용 봉감	190-1	406	339	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575	달성기석 외1
35	신용 봉감	190	696	72	답	신용면 줄바위길 169	서용석
36	신용 봉감	190-2	32	32	답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575	달성기석 외1
37	신용 봉감	273	3,970	49	진	신용면 줄바위길 159-20	서원형
38	신용 봉감	273-1	434	354	도	신용면 봉감리 453	서용석
39	신용 봉감	275-1	65	23	도	신용면 봉감리 452	서병설 외1
40	신용 봉감	275	490	350	답	신용면 봉감리 452	서병설 외1
41	신용 봉감	276	2,659	1,189	답	신용면 줄바위길 63-63	강연창

지 장 물 집 계 표

구 분	충남 공주시 신봉면 봉갑리	
	단 위	개 소
한 전 주	EA	16
통 신 주	EA	12
보 조 주	EA	4
표 지 판	EA	3
이 정 표	EA	1
구 조 물	개소	5
총 계		41

구자골 소하천 편입토지내역

연번	위치	지번	지적(㎡)	편입예정 면적	지목	주소	성명	비고
계		30필지		15,469				
1	정안 어울	305	4,596	175	답	정안면 어울리 59	서정순	
2	정안 어울	산32	32,066	746	임	정안면 어울리 442-7	벨헬관광농원조합법인	
3	정안 어울	산33	35,553	41	임	정안면 어울리 153	이석구	
4	정안 어울	295-6	180	56	천	정안면 어울리 155	김선아	
5	정안 어울	295-2	1,417	1,269	천	대전 유성구 구룡달진로 22-359(봉산동)	송원형	
6	정안 어울	295	3,591	330	답	대전 유성구 어은로 57,131동404호 (어은동, 한빛아파트)	윤국진	
7	정안 어울	294	3,490	619	답	정안면 어울리 48	이산래	
8	정안 어울	303-3	2,571	78	전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04(산동)	송문덕 외2	
9	정안 어울	303	2,571	17	전	정안면 어울리 442-7	이은호 외1	
10	정안 어울	302-2	4,641	734	답	정안면 어울리 94	신종식	
11	정안 어울	302-1	307	307	천	정안면 어울리 48	이공래	
12	정안 어울	301	4,589	238	답	대전시 서구 둔신남로181번길 13,202호 (둔신동, 다정빌라)	박금자 외4	
13	정안 어울	298	2,482	409	답	정안면 어울리 56	이양래	
14	정안 어울	292-2	2,628	171	답	정안면 어울음지말길 34-31	박정숙	
15	정안 어울	292-1	1,937	391	답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85-408	이내강	
16	정안 어울	274	1,788	610	답	정안면 어울음지말길 23	이산래	
17	정안 어울	산18-6	62,957	147	임	의당면 웰곡안골길 23	양재섭 외3	

지장물 집계표

지 장 물 명	단 위	지장가옥	지장물	합 계	비 고
전 력 주	EA		6	6	
전 화 주	EA		3	3	
양봉	m ²	36		36	
비닐하우스	m ²	323		323	
수 목	밤나무	주	186	186	
	벗나무	주	10	10	
	느티나무	주	6	6	
	은행나무	주	36	36	
	버드나무	주	8	8	
	가시오가피	주	21	21	
	매실나무	주	1	1	
	두릅나무	주	49	49	
	아카시아	주	9	9	
	복숭아	주	1	1	
	모과나무	주	1	1	
	전나무	주	50	50	
	감나무	주	3	3	
	자두나무	주	1	1	
	사과나무	주	8	8	
	계	주			390

임대조건 공고

공주시 공고 제 2017-133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조건신고에 따른 임대조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2. 01.

공 주 시 장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임대 시작일	임대 종료일	전용면적 (㎡)
공주시 우금티로 580, 107동 602호(금학동, 이편한세상)	140,000,000	0	16.12.28.	18.12.27.	84.69
공주시 신금1길 30-3, 308동 607호(신관동, 신관주공3단지)	30,000,000	0	16.11.4.	18.11.3.	39.69
공주시 번영1로 77-7, 107동 304호(신관동, 신관주공1단지)	55,000,000	0	16.10.26.	18.10.26.	49.22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02월 01일

공 주 시 장

1. 사업명 : 대지조성사업
2.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289-11번지
3. 사업주체
 - 상 호 : (주)덕산개발 대표 조용배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28(탄현동)
 - 대표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05동 1701호
4.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5. 사업개요

구 분	승 인 내 역	비 고
대지면적	10,630㎡	
조성필지	13필지	
조성용도	단독주택 부지	
사업기간	2015.01. ~ 2018.09.25.	

6.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15.01. ~ 2016.11.30	2015.01. ~ 2018.09.25.	사업기간 연장
지번변경	내흥리 산65	내흥리 289-11	2015.04.27.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

7.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의제사항 : 없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1. 24.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미나리1길 11-1 외 2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1.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23-1	2017.01.24	신축	20100112	지역특성 변경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2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984-2	2017.01.24	신축	20100112	구획정리 지역으로 신관동과 금성동의 경계지역으로서 행정구역 및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북산리 267-11	2017.01.24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서석리 5	2017.01.24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곡리 426, 426-4	2017.01.24	신축	20100112	명칭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명칭길로 부여
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곡리 544	2017.01.24	신축	20100112	명칭리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명칭길로 부여
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곡리 490	2017.01.24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곡리 437-31, 437-40	2017.01.24	신축	20110630	골짜기가 깊어 그 모양이 마치 용을 주둥이로 삼았다는 용수리 마을이므로 용수리 마을로 부여 후 행정구역 명칭 활용
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164	2017.01.24	신축	20100112	북쪽의 하천명을 지나는 길로 예전부터 들메거리 불꽃진 지역명칭을 활용
1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의리 337-6	2017.01.24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1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성관리 520-2	2017.01.24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부여 방식 혼합 활용
1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인영리 829	2017.01.24	신축	20131023	탄천일련산명단지 준공에 따른 도로명 부여
1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개척리 715-1	2017.01.24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1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지산리 372-9	2017.01.24	신축	20100112	마을 뒷산이 소가 누운 모양이라 소역리 또는 우외리라 한다하여 정지 자연마을 명칭 활용
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암리 250-2	2017.01.24	신축	20100112	근근에 영구대사묘가 있어 영구대사로 부여
1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암리 산24	2017.01.24	누락	20100112	향포라는 마을과 천교라는 마을을 지나는 길로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포천길이라 부여
1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정산리 619-13	2017.01.24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4	2017.01.24	신축	20100112	예전부터 불리어 내려오던 길 이름이 옥신길이라 주민의견을 따라 옥신길로 부여
1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정영리 357-1	2017.01.24	신축	20100112	한 한림학자가 심은 나무가 잘 자라림 되었다 하여 정지 자연마을 명칭 활용
2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화봉리 124	2017.01.24	신축	20100112	만주제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정지 자연마을 명칭 활용
2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오계리 22-4, 산22-6, 22-8	2017.01.24	신축	2009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반영
2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동정리 92-1	2017.01.24	신축	20100112	옛날에 흰지 꼴을 저장하던 공주의 특징이 있었다 하며, 일련번호 부여 방식 혼합 활용
2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191	2017.01.24	신축	20090710	지역특성 반영(충남 대표 산맥로 반영)
2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고상리 96, 100-3	2017.01.24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후 다른 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2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미산리 48	2017.01.24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6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신정리 149-1	2017.01.24	누락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7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대룡리 109	2017.01.24	신축	20102002	충곡의 무릉도원을 배경으로 남민이 깃들여 있는 골짜기 마을이라 하여 무드실길로 부여
28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진학리 169	2017.01.24	신축	20100112	신평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9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영장리 547-5	2017.01.24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반영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1. 24.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신금1길 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1.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1. 24.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신금1길 7 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1.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98-13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1길 7	2017.01.24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98-15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1길 9	2017.01.24	건물말소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정보교육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공주시 고시 제2014-12호(2014.02.03.)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공주시 고시 제2015-72호(2015.06.0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국토정보교육원 신축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정책사업과(☎041-840-85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6-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 명 칭(변경)
 - 당초 : 지적 연구·연수원 신축공사
 - 변경 : 국토정보교육원 신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 분	명 칭	부지면적(㎡)	사업개요
당초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140,000	○ 지적 연구·연수원 신축공사 1식 (세부내용 관련도서 참조) - 건축면적 : 12,258.92㎡
변경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140,000	○ 국토정보 교육원 신축공사 1식 (세부내용 관련도서 참조) - 건축면적 : 8,663.8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 당초 : 대한지적공사 사장 김영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 변경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김영표(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까지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06. 30.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해당 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봉황로 구간 추가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주시 간판정비사업계획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2. 1.

공 주 시 장

□ 간판정비사업 계획

가. 사업명칭 : 구도심 아름다운 응진로 만들기 사업

나. 사업위치 및 구간

- 응진로 일원 : 480m(공주고등학교 ~ 의료원삼거리)
- 공주고 앞 : 150m(공주농협봉황지점 ~ 삼호분식)
- 제민천1길 : 250m(주연이네 ~ 편의점CU)
- 제민천2길 : 500m(지구ENG ~ 금학지구대) 신규 추가고시지역
- 봉황로 : 700m(시청앞 ~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 신규 추가고시지역

다. 사업기간 : 2016. 1. ~ 완료 시.

라. 사업예산 : 370,000천원

마. 사업내용

-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고시(안) 내용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업소당 4백만원 (자부담 10% 포함)이내 사업비 지원
 - ※ 1점포당 2개의 간판 이내로 지원
- 사업지구 내 주민자율협의체 구성
- 간판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 내 건물주와 점포주 등으로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제1조(목적)

공주 구도심 상권밀집지역의 응진로 일부 구간을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불법·노후광고물을 거리의 특색을 살리는 아름다운 디자인 간판으로 개선함으로써, 활기 있고 낭만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3,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봉황로 : 700m(시청앞 ~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

※ 정비시범구역 현황 및 위치도 : 【붙임】 참조

제4조(예산의 지원)

지정된 시범구역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①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이며, 설치가 허용되는 광고물의 종류는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에 한한다.
-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1. 곡각지점 또는 건물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의 가로형 간판
 2.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돌출형 간판
 3. 의료시설, 약국, 이·미용업소는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약, 등)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되, 입체형 간판의 세로크기는 70cm, 판류형 간판의 경우 크기는 100cm 이내로 표기한다.

- 가로 크기는 벽면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대 크기는 10m 이내로 표시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부분은 3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1층 가로형 간판은 판류·입체형을 혼용하나 입체형을 권장하고 2층 이상은 입체형 설치를 권장한다. 단, 건물특성상 가로간판 부착공간이 부족할 경우 5층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6층 이상에 가로형 간판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돌출 간판의 표시방법

- 간판규격은 가로 100cm(게시틀 포함 120cm)이내, 세로 100cm 이내, 두께 3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기타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 간판의 형태·서체 등 디자인은 공주시 웅진로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저채도·저명도 색상을 사용하되, 공주시경관기본계획권역별색채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6조(디자인 및 표시 등)

- ① 광고물은 장소 또는 건물에 어울리도록 크기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 ② 같은 건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간 세로폭과 돌출폭을 맞추어 표시하여야 하며, 인접간판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 및 신고 등)

- ①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단,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이하의 가로형 간판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내용)

- ①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주표시, 보조표시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의 비례 및 간격을 과도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주표시 : 업소를 상징하는 이디어그램(Ideogram), 상호 또는 브랜드명
(사진·상품·가격의 직접 표시 및 내용반복 표시금지)

2. 보조표시 :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

(영업내용의 경우 대표 품목 2가지 이내로 표시)

- ② 주표기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디자인 및 브랜드 특성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보조 표시로 병행 하여야 한다.

제9조(색채)

- ① 색채는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되 빨강, 검정 등의 원색을 지양하며, 바탕색으로 흑색류나 적색류를 사용하는 경우 간판 전체의 1/2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 ② 다만, 디자인 및 브랜드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허용 할 수 있다.

제10조(조명)

- ① 광원은 높은 조도나 점멸사용을 금지하며 야간조명의 경우 고효율 저전력의 광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것을 지양하고 투과 매체에 의해 인식되는 간접 조명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직접 노출 조명을 사용할 경우는 공주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 ③ 아름다운 야간 경관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조명 등의 특별 조성 조명의 경우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정한 뒤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간판의 총 수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제12조(세로형간판·에드빌론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에드빌론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3조(현수막·벽보 표시방법) 일체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지정 게시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건물벽면의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 이용 광고물은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정하여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내 또는 25cm이내의 띠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의 외부가격표시 대상 업소의 경우는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점멸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형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②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조명의 광원(光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적용의 특례)

건물의 특성, 간판의 디자인상 표시방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및 광고물的高품격화 또는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옥외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 가능

제17조(사후관리)

본 사업이 완료된 후 간판을 신규설치·변경·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공주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조례에 따라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2016년 정비시범구역 위치도(추가지역)



【붙임2】

정비시범구역 지정 현황

개소	위 치	개소	위 치
1	봉황로 12- 1(봉황동 320대)	31	봉황로 59(반죽동 315- 1대)
2	봉황로 14(봉황동 320대)	32	봉황로 57(봉황동 150- 1대)
3	봉황로 14- 1(봉황동 321대)	33	봉황로 55- 1(봉황동 149- 1대)
4	봉황로 16(봉황동 323- 3대)	34	봉황로 5(봉황동 149- 2대)
5	봉황로 16- 1 (봉황동 323- 1대)	35	봉황로 51- 1(봉황동 149- 8대)
6	봉황로 18 (봉황동 323대)	36	봉황로 51(봉황동 171- 1대)
7	봉황로 20 (봉황동 324대)	37	봉황로 49- 1(봉황동 173대)
8	봉황로 22 (봉황동 325대)	38	봉황로 49(봉황동 174대)
9	봉황로 24(봉황동 326- 1대)	39	봉황로 47(봉황동 175- 1대)
10	봉황로 24- 1(봉황동 326대)	40	봉황로 45(봉황동 190대)
11	봉황로 28(봉황동 327- 1대)	41	봉황로 43- 2(봉황동 191- 1대)
12	봉황로 30(봉황동 327- 5대)	42	봉황로 43(봉황동 198- 1대)
13	오거리길 2(봉황동 328대)	43	봉황로 41- 1(봉황동 199- 1대)
14	봉황로 44(봉황동 106대)	44	봉황로 39(봉황동 200- 1대)
15	봉황로 46(봉황동 107- 2대)	45	봉황로 35(봉황동 201- 1대)
16	봉황로 48(봉황동 135대)	46	효심1길 2(봉황동 202- 2대)
17	봉황로 50(봉황동 134대)	47	일락산1길 2(봉황동299대)
18	봉황로 54(봉황동 141- 7대)	48	봉황로 17(봉황동 304- 7대)
19	봉황로 56(봉황동 141- 6대)	49	봉황로 15(봉황동 304- 7대)
20	봉황로 56- 1(봉황동 148- 1대)	50	오거리길 14(봉황동 346대)
21	제민천1길 2(봉황동 141- 2대)	51	오거리길 12(봉황동 346대)
22	봉황로 60(반죽동 284- 3대)	52	오거리길 10- 1(봉황동 346대)
23	봉황로 60- 1(반죽동 314- 1대)	53	오거리길 10(봉황동 331- 1대)
24	봉황로 62(반죽동 313- 1대)	54	오거리길 6(봉황동 330- 6대, 330- 2대)
25	봉황로 64- 1(반죽동 310- 4대)	55	오거리길 9(봉황동 94대)
26	봉황로 66(반죽동 259- 3대)	56	오거리길 11(봉황동 93- 1대)
27	봉황로 66- 1(반죽동 259- 1대)	57	오거리길 13(봉황동 93- 2대)
28	봉황산1길 3(반죽동 337- 6대)	58	대통 1길 3(봉황동 91- 1대대)
29	봉황산1길 2(반죽동 338대)		
30	봉황로 61(반죽동 316대)		